행정안전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5. 10. 30.(목) 즉시보도

정부,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

- 9.6~7일 호우 피해액 108억 원, 복구비 339억 원 확정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[redacted] 행정안전부장관)는 10월 30일(목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 원으로 확정하고, 복구비 총 33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.

○ 지난 9월 6일(토)부터 7일(일)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㎜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.

○ 이로 인해, 주택 침수 501동, 소상공인 2,914개 업체, 농·산림작물 2,651ha, 소하천 7개소, 도로 5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.

□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339억 원으로 확정했으며, 이 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 원,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 원이다.

○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·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(기존 정부지원 + 추가지원)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.

- 침수 주택은 도배·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,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.
-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.
- 농·산림작물, 가축,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%에서 100%로 상향했다. 농·축·임·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%에서 45%로 상향 조정했다.

- 아울러,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*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.

 * 시·군·구별 피해금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 이상

○ 이 외에도, 피해 주민에게는 ▲국세 납부 유예 ▲지방세 기한 연장 ▲국민연금 납부 예외 ▲재해복구자금 융자 ▲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▲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.

□ [redacted]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“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[redacted]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	[redacted] (044-205-531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
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

□ **지원대상** :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

※ 피해발생 지자체(인명피해는 등록 주소지)에서 발급 가능

□ **지원방법**

○ **(원스톱 지원)** 별도 신청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

○ **(신청 지원)**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,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

□ **지원항목** : 총 24개 항목

구분	지원항목	지원기준			소관기관		지원 방법(구비서류)
1	**국세 납부 유예**	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·신고·납부기한 연장			관할세무서		**원스톱 지원**
2	**지방세 기한연장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**	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 시 취·등록세 면제			시·군·구 세무부서		**원스톱 지원**
3	**국민연금 납부 예외**	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(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)			국민연금공단		신청지원
4	**상하수도요금 감면**	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			시·군·구 상하수도 부서		**원스톱 지원**
5	**재해복구자금 융자 및 보증**	농·어·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	한도 재해복구비 중 융자금 기간 15년 이내(거치 5년) 금리 연1.5%고정	금리, 대출기간, 한도 등은 변동 가능	농·임·어업	농협 수협 산림조합	신청지원 (융자신청 관련 서류)
		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	한도 42~136백만 기간 20년 이내(거치 3년) 금리 연1.5%		주택	우리은행	신청지원
		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	한도 연간 10억원이내 기간 5년 이내(거치 2년) 금리 연1.5%고정		중소기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신청지원 (재해중소기업 확인증)
		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(재해자금)	한도 1억원이내 기간 10년 이내(거치 5년) 금리 연1.4%고정		소상공인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신청지원 (재해소상공인 확인증)
		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	한도 3억원 전액보증 보증료율 0.5%고정		소상공인 중소기업	지역신용보증재단	신청지원 (재해중소기업 확인증, 피해사실확인서)

구분	지원항목	지원기준	소관기관	지원 방법(구비서류)
6	**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**	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- 사망·주택전파 : 500만원 - 재산 1,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※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	지방보훈관서	**원스톱 지원**
7	**농기계 수리지원**	농기계 유·무상 수리 *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·수리업체와 지원·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	시·군·구 농업부서	**원스톱 지원**
8	**지적측량 수수료 감면**	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 -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	시·군·구 토지부서	신청지원 (감면 신청서)
9	**병역의무 이행일 연기**	현역병 입영일자 연기	병무청	신청지원 (연기 원서)
10	**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**	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·공유재산,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	시·군·구 재무·회계 부서 또는 지방산림청	신청지원 (감면 신청서)
11	**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**	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(600원/통) 면제	확인서 발급기관	**원스톱 지원**
12	**상속세 재해손실 공제**	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·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	관할 납세지 세무서	신청지원 (재해손실 공제신고서, 상속세 과세표준신고)
13	**과태료 징수 유예**	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(1년)	관계 행정청	신청지원 (과태료 분할 납부 등 신청서)
14	**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**	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·유예	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	신청지원 (연장·유예 신청서)
15	**위기가족 긴급지원**	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·양육·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·가족상담 등 지원	전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	신청지원 (초기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)
16	**농지임대료 감면**	맞춤형농지지원 사업(한국농촌공사 시행)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%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(45~100%)	한국농어촌공사	신청지원 (감면 신청서)

구분	지원항목	지원기준	소관기관		지원 방법(구비서류)
17	**공공임대 주거 지원**	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(연장 가능)	시·군·구 주택부서		신청지원
18	**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**	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(6개월),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	우체국	수수료 면제	**원스톱 지원**
				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	신청지원 (신분증, 피해사실확인서 관할우체국 제출)
19	**법률지원 서비스**	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	대한법률구조공단		신청지원
20	**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**	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	-		**원스톱 지원**
21	**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**	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	병무청 예비군부대		신청지원 (피해사실확인서)
22	**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**	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	관할 주민센터		신청지원 (피해사실확인서)
23	**취업지원 서비스 유예**	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(자격)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(2년 이내)	직업안정기관		신청지원 (피해사실확인서)
24	**가전제품 수리 지원**	가전제품 유·무상 수리 ※ 협력사(삼성, LG)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리 가능하며, 일부 품목은 유상수리(50~100%), 공휴일은 미영업	삼성전자 LG전자		신청지원